

2022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자주 묻는 질문(FAQ)

2022. 5.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개요>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이 궁금합니다.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은, 2022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의 하위 트랙으로, 민간예술단체(예술인)의 작품 발표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공연장 대관료의 일부를 사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피해 완화를 위하여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네거티브 심사 방식(기공고된 행정결격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자격>

단체등록증(사업자, 법인, 고유번호증) 이 없는 개인 예술인(또는 프로젝트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개인의 경우) 개인 창작·발표의 경우에만 개인 명의의 ID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프로젝트팀의 경우) 개인 예술인이 한시적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공연한 경우, 프로젝트 멤버 중 대관료를 지불한 사람의 개인 명의 ID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사업자, 법인, 임의단체 등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 명의의 ID로 신청해 주셔야 하며, 대표자 개인 ID로 신청할 경우 행정 결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지원신청 할 수 있나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조건으로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를 지원신청 부적격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예술인복지법 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가능하므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유효한 예술 활동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명의로 신청할 경우, 단체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신청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진흥기금 사업인 경우) 동일 사업(공연)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관료 항목을 지원받지 않았더라도 지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타 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의 사업인 경우) 대관료 항목을 지원받지 않았다면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관료 항목을 일부라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지원결정 이후에라도 해당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복합문화공간, 대안공간, 카페, 야외 등 정식 공연장이 아닌 시설에서 공연을 해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본 사업은 국내 소재의 공연장(법정 등록 필수)을 대관한 공연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공연 환경을 위하여 공연법 제9조 1항에 의거, 객석 수 또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공연장이 법정 등록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관한 공연장이 공연법 상 등록된 공연장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지원신청 시 공연장에 문의하여 공연장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1차 공모 지원대상 공연의 지원 기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유형 1의 경우, 1차 공모 지원가능 기간을 '공연종료일' 기준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ex) · 2021년 11월 5일 ~ 2021년 12월 4일까지 진행한 공연은 공연종료일이 2021년 12월 4일이므로, 전 기간(2021.11.5~2021.12.4)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1년 12월 1일 ~ 2022년 4월 2일 까지 진행한 공연은 공연종료일이 4월 2일이므로, 2차 공모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 2의 경우, 1차 공모 지원가능 기간을 '공연시작일' 기준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ex) · 2021년 12월 1일 ~ 2022년 4월 3일까지의 공연은 공연시작(예정)일이 2021년 12월 1일 이므로, 전 기간(2021.12.1~2022.4.3)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1년 10월 1일 ~ 2021년 12월 5일 까지의 공연은 공연시작(예정)일이 2021년 10월 1일이므로, 12월 1일~ 5일까지는 대관료 일할 계산하여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이 되는 분야(장르)는 무엇인가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문예진흥기금 설립목적에 따라, 기초 공연예술분야(연극(뮤지컬 포함), 무용, 음악, 전통예술, 공연을 기반으로 한 다원예술)을 지원합니다. 예술을 정형화된 틀에 맞춰 규정할 수는 없으나 기초 공연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기초 공연예술의 개념과 그 범위를 아래와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합니다.

기초예술은 예술적 동기에 의해 발생한 예술로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창작물로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작동하는 문화산업과는 달리 시장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특히 기초 공연예술은 기초예술 영역 안에서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이른다. - (출처) 박종웅(2015). 예술의 산업화를 위한 법·제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11-12. 공연법 제2조(정의)

☞ 이에 따라 대중가수의 콘서트, 토크콘서트, 인디밴드 공연, 마술쇼, 개그쇼 및 워크숍, 쇼케이스 등은 본 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지원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항목과 해당하는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공연장의 순수대관료(설치 및 리허설, 공연대관, 철수대관)와 부대시설사용료 총액의 90%입니다. 부대시설사용료 중에는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시설, 장비, 공간(냉·난방, 수도, 전기, 대기실, 녹화·녹음, 악기·장비 대여, 악기 조율 등)만 해당합니다. 외부장비 임차 비용, 주차권, 배너홍보비, 연습공간 사용료, 티켓발권비 등 비용은 본 사업의 지원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치 및 리허설 일정이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연습공간 대여를 위한 것이라 간주하여,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관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부대시설의 경우에도,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작성 및 지원신청하신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제출서류를 통하여 증빙되어야 하며, 제출·증빙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신청액과 증빙 금액과 다른 경우,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 및 지원결정합니다.)

여러 개의 극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동일 대표자가 복수의 단체 및 개인 명의 등 여러 개의 명의로 신청할 경우에도, 1개의 지원 신청주체로 간주합니다. (대표자 1명당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신청 주체	신청사업(공연)명	지원신청액	심사 대상 금액
A 극단(대표 : 홍길동)	뮤지컬 <○○○>	2,000만원	3,000만원
B 극단(대표 : 홍길동)	연극 <■■■>	1,000만원	
홍길동(개인)	홍길동 ■■■ 독주회	500만원	

온라인(비대면) 공연도 지원신청 할 수 있나요?

☞ 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공연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링크 등을 함께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1과 유형 2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유형①은 완료된 공연의 대관료를, 유형②는 취소된 공연의 미환불 대관료를 지원합니다. 유형①은 예정된 기간 동안 진행한 공연을 지원합니다. 공연종료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형②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의 미환불 대관료에 대하여 지원하며, 공연시작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공연 변경 및 취소 수수료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공연을 했지만 중간에 일부 취소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 공연을 진행하고 계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취소가 있더라도 유형①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연을 진행하는 중간에 취소되었으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하였거나, 공연을 중단하였다가 재개 하였으나 중단된 기간 동안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형①로 지원신청을 하시고, 해당 기간 동안의 '공연취소확인서(미환불된 대관료 내용 포함)'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

공연장의 계약서 작성 거부(또는 구두계약 관행, 온라인계약 등)로 인하여 대관계약서가 없습니다.

☞ 안전하고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연장 대관 시 반드시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계약서는 본 사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서류로, 대관공연장의 발급 거부, 온라인 대관 신청 시스템 사용, 대체 서류 작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대관허가서, 대관 승인공문 등의 서류로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서류에도 대관일정, 금액, 내역, 공연명 등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공연장 홈페이지에서 부대시설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부대시설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 네, 대관 공연장의 부대시설사용료가 공개되어 있더라도 지원신청한 단체(개인)의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에 별도로 부대시설 사용내역서와 부대시설사용료 납부 증빙서류를 지원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계좌이체확인증이 무엇인가요? 은행에 가서 발급해야 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공연장에 해당 금액을 입금(이체)하였다는 확인 서류 형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송금하시는 분의 성함과 송금 받는 분의 성함(대관공연장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뱅킹으로 직접 출력 가능)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무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의 경우, 운영방식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의 집합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 공연장에서 발행하는 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전자세금계산서 효력의 대체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체확인증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대관료 납부 증빙 서류	공연장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확인증	○ 대관료 납부고지서 + 계좌이체확인증
○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체크)카드 영수증(매출전표)	○ 대관료(지방세외수입) 납부확인서 + 계좌이체확인증

제출서류를 빠뜨려서, 이메일로 추가 제출하고 싶습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외 이메일, 우편, 방문 제출 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NCAS에서 제출된 지원신청서는 지원신청 마감(5. 23(월) 18:00) 이전까지는 기존 지원신청을 회수한 후에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마감시 직전에 회수하여 마감시를 초과한 후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시 초과 후에 제출하게 되면, 이전에 제출하셨던 건이 있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나의 지원신청현황'에서 해당 지원신청서를 클릭하면 기존 지원신청내용이 나옵니다. 팝업창의 [회수] 버튼을 클릭해 수정한 후, 다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체 명의의 통장(계좌)이 없는 경우,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 네, 단체의 경우, 단체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의 대표자와 통장 예금주의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